

# 瑞山市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 1. 審查經過

가. 提出日字 : 1998. 8. 21

나. 提出者 : 瑞 山 市 長

다. 回附日字 : 1998. 8. 21

라. 上程日字 : 1998. 8. 26

## 2. 提案說明要指(提案說明: 總務課長 方景泰)

### 가. 提案理由

- 국가경제 위기극복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직을 개편 축소하며,
- 축소개편된 기구 기능에 따라서 분장사무를 조정코자 함.

### 나. 主要骨子

- 기존 서산시행정기구조직을 개편 조정하여 시본청에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국, 산업건설국을 설치하고,
-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 정책, 정보담당 업무를 통합내지 흡수하며,

-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체육진흥 업무를 흡수 조정토록함.
- 총무국에는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종합민원실, 사회여성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역경제과, 지적과를 두고,
  - 기존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의 새마을담당 업무를 흡수,
  - 기존 시민과를 종합민원실로 명칭을 변경, 병무담당 업무를 흡수
  - 기존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 사회여성복지과로 명칭변경
- 산업건설국에는 산업과, 축산해양과, 산림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교통과를 두며,
  - 기존 축산과와 해양수산과를 통합, 축산해양과로 명칭 변경
  -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사업소 폐지에 따른 업무와 기존 해양수산과의 해양오염방지담당 업무를 흡수
  - 건설과에서 기존 사회진흥과의 개발업무를 흡수하고, 지역개발담당을 신설 지하수 및 하천, 오지 및 낙도 개발사업 업무를 조정 분장,
  - 기존 도시과와 건축과를 통합 도시건축과로 교통행정과를 교통과로 명칭을 변경
  - 기존 수도과는 서산시 상하수도 사업소로 통합함.

###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指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는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 현행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상 3국 4담당관실 20개과의 행정기구를 2국 2담당관실 15개과로 기구 조직을 개편하여, 1국 2담당관실 5과를 축소 조정, 대국 대과 체제로 시본청 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기구는 축소되지만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서비스를 모든 시민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기구라고 사료되며,
- 본 행정기구 개편안 내용과 관련되는 서산시직제규칙 개정시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요하는 사항으로 사료되는 것은,
  - 종합민원실에 유기한 복합민원 서류를 접수한 건별로 민원인 상담부터 완결처리후 교부까지 복합민원서류 처리담당 책임공무원 지정 시행대책과,
  - 현재 서산시의 도심권발전성장 추세로 보아서 많은 우량택지와 도시기반시설 조성이 필요한데 비해서 시 재정 여건상 투자재원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구획정리만을 전담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구획정리담당을 도시건축과나 건설과에 두고 담당업무를 분장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며,

- 개정 조례(안) 제7조 제2항중 " 규정" 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4항과 맞지 않으므로 " 규칙" 으로 수정을 하여야 하고, 개정 조례(안) 부칙 제2조 각항중 2항,3항,4항,5항,7항,9항,11항,13항, 14항,17항,19항의 시행규칙 개정 사항은 서산시직제규칙 개정시 부칙에 규정함이 타당하며, 여타 사항은 본 개정조례(안)대로 개정하여도 조례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指 : 없었음.**

**5. 討 論 : 없었음.**

**6. 少數意見 : 없었음.**

**7. 審査結果 : 수정 가결**

※ 수정안 별첨

##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제2조 26항중

제4조 제1항중 “건설도시국장”을 “산업건설국장”으로  
“수도과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를

제4조 제1항중 “건설도시국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2호, 4호, 6호, 8호를 삭제하며,

10호, 11호, 12호, 13호중 “계장”을 “담당”으로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p>②6) <u>서산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u> <u>조례</u>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u>제4조 제1항중 “건설도시국장”</u> <u>을 “산업건설국장”으로 “수도</u> <u>과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u> <u>으로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 -----</p> <p><u>제4조 제1항중 “건설도시국장”</u> <u>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u> <u>2호, 4호, 6호, 8호를 삭제하며</u> <u>10호, 11호, 12호, 13호의 “계장”</u> <u>을 “담당”으로 한다.</u></p>

의안번호	제 13 호
의결년월일	1998. 8. 27. (제32회)

##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8. 8. 27

#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
----------	----

제출년월일 : 1998년 8월 21일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 1. 개정이유

- 국가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자치단체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직이 축소 개편됨에 따라,
- 개편된 기구를 설치하고 기능에 따른 사무의 대강을 분장코자 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 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문화공보담당관실·총무국 및 산업건설국을 설치한다(안 제2조).
- 나.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개발담당관실을 통합하고 관련업무를 흡수하며 자치행정과의 정보전산담당 업무를 흡수조정(안 제3조).
- 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사회진흥과의 체육지원담당 업무를 흡수조정(안 제4조).
- 라. 총무국내에 자치행정과·세무과·회계과·종합민원실·사회복지과·민방위재난관리과·지역경제과 및 지적과를 설치하여 관련업무 분장(안 제5조).
  -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명칭 변경 설치하고 사회진흥과의 도의새마을담당 업무 흡수
  - 시민과를 종합민원실로 명칭 변경 설치하고 민원상담담당을 신설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 병무담당을 흡수 설치
  -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하고 일관된 복지업무 추진
  -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계와 건설과 방재계를 통합하여 재난방재담당으로 하여 분리되었던 재난관리업무 일원화

마. 산업건설국내에 산업과·축산해양과·산림과·환경보호과·건설과·도시건축과 및 교통과를 설치하여 관련업무 분장(안 제6조).

- 축산과와 해양수산과를 통합하여 축산해양과를 설치하고 해양수산과의 해양오염 방지담당을 환경보호과 오염방지담당으로 흡수통합
- 환경보호과 환경시설관리담당을 신설하여 환경사업소 폐지에 따른 업무흡수와 환경관련시설 관리업무 분장
- 건설과 도로담당에 사회진흥과 개발계 업무중 도로관련 업무를 분장하고 지역 개발담당을 신설 지하수 및 소하천 관련업무와 사회진흥과 개발계 업무중 도로관련 업무를 제외한 오지개발 및 도서낙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등을 분장하고
- 도시과와 건축과를 통합하여 도시건축과로 하고 관련업무 분장
- 교통행정과를 교통과로 명칭변경 설치하고 교통시설담당을 신설 관련업무 분장

##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국·과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담당관·문화공보담당관·총무국 및 산업건설국을 둔다.

제3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 행정의 종합 및 기획·조정·통제
2. 시정기본운영계획 수립과 심사·분석
3. 지역발전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4. 법제 및 소송업무
5. 시 예산의 편성·집행 및 감독
6. 시비결산 심사
7. 지방채·기채일시차입 및 채무부담행위
8. 지방재정동원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9.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10. 대통령·국무총리·장관·도지사 및 시장 지시사항 처리
11. 국제간의 섭외·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12. 해외 동포와의 유대
13. 감사계획수립 및 시행
14. 시 행정감사
15. 상급기관의 감사 지시사항 처리
16. 민원사무 처리상황 검열
17. 지방세무 감찰, 민원사무 처리상황 검열
18.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19. 기타 감사·조사에 관한 사항(특명사항 등)
20. 각종 통계작성 및 관리
21. 공기업경영 종합계획 조정
22. 의회 관련업무의 총괄지정
23. 전산실 설치 및 운영·관리
24. 행정업무의 전산화 개발 및 시행
25. 목표관리제 심사분석

제4조(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보계획 수립·실시
2. 언론 공보자료의 수집·편찬
3. 시정홍보
4.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감독
5. 문화재의 보호관리
6. 출판·향교·사찰관리
7. 관광지 조성·관광개발 및 홍보
8. 공보 매개체의 보급·육성
9. 사회단체등록, 정기간행물 발간
10. 종교에 관한 사항
11. 전시홍보 및 매체동원에 관한 사항
12. 전시 문화계획 수립실시에 관한 사항

13. 유선방송 업무에 관한 사항
  14. 해미읍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경기가맹단체 지원·관리
  16. 체육회 운영·지도
  17.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업의 등록·신고 등 지도·단속
  18. 체육공원 조성
  19.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
  20. 국민 레저시설 확충 및 레저활동 지원
  21.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
  22. 기타 체육업무
  23. 그밖에 문화공보, 체육행정에 관한 사항
- 제5조(총무국) ①총무국에 자치행정과·세무과·회계과·종합민원실·<sup>여성</sup>사회복지과·민방위재난관리과·지역경제과 및 지적과를 둔다.
- ②자치행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일반사무
  3. 복무단속
  4. 보안업무
  5. 공무원 교양 및 복지
  6. 하부 행정기관의 지원 및 지도·감독
  7. 행정구역 개편
  8. 직제 및 정원 인사
  9. 선거 및 국민투표
  10. 문서 수발·통제
  11. 문서 보존·보관
  12. 방위협의회 운영
  13. 공인관리 및 취미활동 지원

14. 주민여론 수집·분석
15. 주민등록관리
16. 학령아동 취학업무 및 학사관련 업무
17. 행정서사, 인장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
18. 전시 자체행동 절차 및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19. 전시 주민 및 차량통제에 관한 사항
20. 포상에 관한 사항
21. 의식 및 행사
22. 통신시설의 유지·관리
23. 반상회 운영, 여론 및 대화행정
24. 광역협의회 및 행정협의회에 관한 사항
25. 새마을사업의 종합추진
26. 건전생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27. 새마을교육 및 홍보
28. 새마을지도자 관리
29. 마을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
30. 그밖에 다른 실·국·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세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재조사 및 심사청구
4. 지방세 세원조사 및 국세위탁징수에 관한 사항
5. 부동산 평가 업무
6. 수익사업 및 직영기업 지원·육성
7. 세무조사 평가업무
8. 기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개발

9. 기부금 모집 통제

10. 시금고 지도·감독

11. 그밖에 세무에 관한 사항

④회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비 및 보조금의 세출예산 정리

2. 시비 출납보관

3. 물품의 조달 및 출납보관

4.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보관

5. 시유재산에 관한 사항

6. 영선관리

7. 유가증권 재원의 관리

8. 국·공유 재산에 관한 사항

9. 그밖에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⑤종합민원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창구민원의 즉결처리

2. 행정안내 및 민원상담

3. 민원사항의 열람

4. 민원서류의 수발·통제 조정

5. 민원업무의 연구 및 발전

6. 민원행정제도 개선 및 연구·지도

7. 호적업무

8. 행정규제 완화 및 쇄신주관

9. 제증명 발급

10. 외국인 등록

11. 민원1회방문 처리제도 운영

12. 병무업무

13.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14. 민원인 간호사업

⑥ <sup>작성</sup>사회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민생활보호(구호·후생)
2. 기아·부랑인 정신박약아의 보호
3.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 업무
4. 의료보험법에 의한 지역의료보호 업무
5. 보훈관계 업무
6.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7. 복지행정의 종합계획
8. 보육시설의 지원 및 지도·감독
9. 여성의 지위향상 및 생활개선
10. 부녀자의 직업보도
11. 윤락여성의 선도·보호
12. 아동복지 증진
13. 부녀아동 상담 및 상담소운영 지도·감독
14. 아동 부랑아 선도 및 기·미아의 보호
15. 경로당 지원·육성
16. 노인복지 대책
17. 의례업소 지도·단속
18.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
19. 청소년 시책업무 종합계획 수립 추진
20. 청소년 건전 육성
21. 학교주변 폭력 근절 및 지도·단속
22. 기타 복지에 관한 사항

⑦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방위 계획 수립·운영
2.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동원
3. 민방공 계획 수립
4.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
5. 전시 근로동원에 관한 사항
6. 비상대책업무(다만, 주민이동, 관서이동, 비상대비, 지방조직업무는 제외)
7. 전시 민방위계획 및 인력동원 계획수립 실시에 관한 사항
8. 전시 경보 통제소 운영·관리
9. 전시 중앙통제소로부터 전달되는 경보 및 지역군부대가 발령하는 화생방경보 전달
10. 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1.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계획수립 및 예방
12. 시 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 구성·운영
13.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평시 보고체계 구축
14. 재난대비 물자·자원·장비파악 및 재난단계·규모·유형별 동원계획 수립운영
15. 재해방지 대책 업무
16. 재난상황실 운영
17. 재난·재해상황 종합관리 및 평시보고 체계 구축
18. 그밖에 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⑧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경제·상공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2.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추진
3. 수출진흥과 과학기술진흥
4. 연료·전기 및 계량기에 관한 사항
5. 시장개량 및 관리
6. 물가조사 및 정찰제 실시에 관한 사항
7. 광공업 등 등록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지도

8. 공단. 일반공업 용지조성 및 농공단지 조성, 육성 지도
9. 공산품 품질관리
10. 저축업무 및 금융지원 지도·감독
11. 제조담배 소매인의 지정·승인 및 신고수리
12. 자원동원계획 수립·실시에 관한 사항
13. 실업대책
14. 상공동원 계획 수립
15. 노정에 관한 업무
16. 민·관공업투자 사업개발
17. 기타 지역경제 및 상공에 관한 사항

⑨지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 토지관리 취득 업무
2. 지적민원 처리
3. 지적장비 운영·관리
4.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사항
5.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
6. 부동산 중개업 허가 처리 및 지도·단속업무에 관한 사항
7.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 업무
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업무
9. 지적공부 보존·관리
10. 매매계약서 검인 업무
11. 이동지 검사·정리
12. 토지거래 허가·신고 업무
13. 지적측량 기초점 보존·관리
14.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
15.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16. 토지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17. 표준지 및 개별 공시지가 조사·결정에 관한 업무
18. 토지공개념 제도 관련업무
19. 그밖에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산업건설국) ①산업건설국에 산업과·축산해양과·산림과·환경보호과·건설과·도시건축과 및 교통과를 둔다.

②산업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산업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3. 식량작물의 증산·장려
4. 특용 원예작물의 증산·장려
5. 농업자재 및 종자갱신
6. 농업기상 및 농작물 재배대책
7. 농업경제 및 경영근대화
8. 농산물 가공처리 및 시장개척
9. 농민 소득증대
10. 양곡관리·수매·수급조절 및 가공업무 지도
11. 잠업증산 및 기술보급
12. 농림수산 동원계획 수립(농업분야)
13. 영농기계화 추진 및 농업경영 합리화
14. 농산물 유통 및 가공에 관한 사무
15. 농산물 유통법인 지원 및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보호
16. 정부양곡 대행기관 및 수탁기관의 감독
17. 그밖에 산업행정에 관한 사항

③축산해양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산행정의 종합계획

2. 가축증식 및 개량
3. 가축위생 및 공수의 지도·감독
4. 초지조성개량 및 사료대책
5. 축산물 유통 및 축산물 가공처리 지도·감독
6. 도축장 및 가축시장 관리
7. 농림수산 동원계획 수립(축산·수산분야)
8. 그밖에 축산업무에 관한 사항
9. 수산진흥을 위한 계획수립 실시
10. 어로지도 및 장비개량
11. 수산단체의 지도·감독
12. 수산증식 및 수출제조·가공
13. 수산물 유통 및 수출장려
14. 부정사업 단속 및 어업처분
15. 수산물 유통 및 수출장려
16. 어업조정에 관한 사항
17. 각종 수산업무에 관한 사항
18. 내수면 어업분쟁에 관한 사항
19. 도간 어업분쟁 지도·조정
20. 산업시설 확장에 따른 수산 피해대책
21. 공유수면(바다부분, 빈지) 유지·관리 및 매립 관련사항
22. 어업지도선 관리
23. 그밖에 수산업무에 관한 사항

④산림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림행정 종합계획 수립
2. 임야내 치산계획의 수립실시
3. 사업 및 묘목의 수급관리·검사

4. 양묘 조립 및 수종갱신
5. 사방사업
6. 유실수 및 특용수종 장려
7. 임야단체 및 제재시설 감독
8. 화초 및 관상수 재배관리
9. 임업기술 개량보급
10. 산림재해 예방 및 방지
11. 산림 병충해 예방 및 방제
12. 임산물 수급조정 및 증산
13. 산지개간(훼손)허가
14. 산림보호 부정임산물 단속
15. 국·공유 임야관리
16. 야생조수·보호 및 수렵단속
17. 도시공간 녹화계획 수립 및 실시
18. 가로수 식재관리
19. 자연휴양림 조성과 지정신청
20.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21. 임야매매 증명 발급관계 업무
22. 임도개설
23. 임산물 소득원 개발·육성
24. 임업진흥 촉진지역의 개발
25. 보안림 관리
26. 산불예방을 위한 금지행위(오물·쓰레기투기 및 취사행위 등) 지도·단속
27. 농림수산 동원계획 수립(산림분야)
28. 노변제초 및 꽃길 화단조성
29. 전국토 공원화 사업 추진
30. 그밖에 산림 및 녹지업무에 관한 사항

⑤환경보호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보존 종합대책 수립·지도
2. 환경영향평가 협의
3. 환경분쟁 조정
4. 공해배출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5.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허가
6. 환경오염 조사·분석 및 오염도 측정
7. 유독물 관리
8. 청소행정의 종합·조정
9. 오물 처리허가 및 지도·감독
10. 분뇨·쓰레기 수거
11. 청소계몽
12. 화장실 개량과 화장실 정화시설 검사 및 개수지시
13. 청소시설 및 관리
14.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15.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해양오염방지 종합대책 추진
17. 우수·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사항
18. 그밖에 환경보호 및 청소에 관한 사항

⑥건설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 및 교량 치수사업의 종합계획
2. 개발계획의 수립실시
3. 하천관리 업무
4. 토목공사의 지도·감독
5. 도로 교량공사의 시행감독
6. 도로 유지·관리 및 편입용지 취득업무

7.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업무
8. 건설동원에 관한 사항
9. 도로·하천의 유지·관리
10. 공유수면(육지부분-하천·호소 등) 유지·관리 및 매립관련사항
11. 정주권 개발에 관한 사무
12.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사업
13. 각종 농지개발 사업의 집행·감독
14. 양수기 관리
15. 국·공유 재산관리
16. 국토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17. 시범 및 취약지 개발
18. 개발행정 및 지도육성
19. 지하수 신고 및 허가
20. 개발사업 종합추진
21. 그밖에 건설업무에 관한 사항

⑦도시건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 구획정리
2. 도시계획 구역내 도로시설 관리
3.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및 국토자연자원의 보존 이용개발(도시지역내)
4. 시가지 계획과 구획정리
5. 불량지구 개발사업
6. 가로등·보안등 및 방범등 유지·관리
7. 택지개발 사업
8. 공영개발 관련 업무

9. 건축행정의 종합계획

10. 건축물의 허가와 관련한 공사 지도·감독

11. 무허가 건축물의 단속

12. 건축사, 주택건설 및 임대주택 사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13. 불량주택·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14. 국민주택 기금관리

15.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추진

16. 그밖에 도시·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⑧교통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수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2. 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감독

3. 정유장 설치 및 이전·인가

4. 주차장(노상·노외)에 관한 사항 및 주정차 단속

5. 여객 운송사업 임시운영 허가

6.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감독

7. 시내버스 노선조정

8. 수송동원 계획 수립실시에 관한 사항

9. 교통량 조사

10.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12. 그밖에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제7조(담당의 설치) ①담당관 및 과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담당을 둔다.

②제1항에 의한 담당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폐지 개정) ①다음의 자치법규는 이를 폐지한다.

1. 서산시대산출장소설치조례
2. 서산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
3. 서산시해미읍성관리사무소설치조례

②서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중 “기획담당관실” 을 “기획감사담당관실” 로, “수도과” 를 “상하수도사업소” 로 한다.

③서산시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총무국장·사회산업국장·건설도시국장·기획담당관·문화공보담당관·감사담당관·정책개발담당관” 을 “총무국장·산업건설국장·기획감사담당관·문화공보담당관” 으로 한다.

④서산시자치법규집발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기획담당관” 을 “기획감사담당관” 으로 한다.

⑤서산시통계연보발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기획담당관” 을 “기획감사담당관” 으로 한다.

⑥서산시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감사담당관” 을 “기획감사담당관” 으로 한다.

⑦서산시자체감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감사담당관” 을 “기획감사담당관”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중 “감사담당관” 을 “기획감사담당관” 으로 한다.

⑧서산시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 제11조제1항, 동조제3항, 제12조 및 제13조중 “총무과장” 을 “자치행정과장” 으로 한다.

⑨서산시직무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기술담당관” 을 “사회지도과장” 으로 하고, 동조제6호를 삭제한다.

⑩서산시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총무과장” 을 “자치행정과장” 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나목중 “기획담당관” 을 “기획감사담당관” 으로 한다.

⑪서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사회진흥과장·산업과장·축산과장” 을 “자치행정과장·산업과장·축산해양과장” 으로 한다.

⑫서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사회진흥과장” 을 “문화공보담당관” 으로 한다.

⑬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중 “의회사무과장” 을 “의회사무국장” 으로 한다.

⑭서산시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자목,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0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제47조제1항 및 제2항, 제70조제1항중 “기획담당관” 을 “기획감사담당관” 으로 한다.

⑮서산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시민과장” 을 “종합민원실장” 으로 한다.

⑯서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과장” 을 “<sup>의성</sup>사회복지과장” 으로 한다.

⑰서산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사회산업국장” 을 “총무국장” 으로 한다.

⑱서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사회과장” 을 “<sup>의성</sup>사회복지과장” 으로 한다.

⑲서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사회과장” 을 “<sup>의성</sup>사회복지과장” 으로 한다.

⑳서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사회산업국장·건설도시국장” 을 “산업건설국장” 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가정복지과장” 을 “<sup>여성</sup>사회복지과장” 으로 한다. <sup>여성</sup> ~~여성~~

제11조제1항제1호중 “가정복지과장” 을 “<sup>여성</sup>사회복지과장” 으로 한다.

①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총무국장

3. 기획감사담당관

제18조제1항중 “사회산업국장” 을 “총무국장” 으로 한다.

②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건설도시국장” 을 “총무국장” 으로 한다.

③ 서산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건설도시국장” 을 “총무국장” 으로, “건설과장” 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으로 한다.

④ 서산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건설도시국장” 을 “산업건설국장” 으로 한다.

⑤ 서산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건설도시국장” 을 “산업건설국장” 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도시과장·건축과장·수도과장” 을 “도시건축과장·상하수도사업소장” 으로 한다.

⑥ 서산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건설도시국장” 을 “산업건설국장” 으로, “수도과장” 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으로 한다.

⑦ 서산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건설도시국장” 을 “산업건설국장” 으로, “교통행정과장” 을 “교통과장” 으로 한다.

⑧ 서산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치행정과장

2. 건설과장

3. 도시건축과장

4. 교통과장

㉑ 서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건설도시국장” 을 “총무국장” 으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서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시행규칙 제2조(사무부서지정) 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총괄부서는 <u>기획담당관실</u>로 한다.</p> <p>②공개시기별 책임부서는 상반기에는 <u>기획담당관실</u>, 하반기에는 회계과로 하며, 조례 제2조제2항에 의한 시장의 인계인수시 재정운영상황 인수에 관한 사항은 <u>기획담당관실</u>로 한다.</p> <p>③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정보생산 및 관리부서를 다음과 같이 재정·운영한다.</p> <p>&lt;당해년도 예산편&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방침 : <u>기획담당관실</u></li> <li>2.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 <u>기획담당관실</u></li> <li>3. (생략)</li> <li>4. 지방채등 채무관리계획 : <u>기획담당관실</u></li> <li>5. 기금운용계획 : <u>기획담당관실(운영부서협조)</u></li> <li>6. (생략)</li> <li>7. 공기업운영계획 : <u>수도과</u></li> </ol> <p>&lt;전년도 결산편&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생략)</li> <li>3. (생략)</li> <li>4. 지방채등 채무관리상황 : <u>기획담당관실</u></li> <li>5. 기금운영상황 : <u>기획담당관실(운영부서협조)</u></li> <li>6. (생략)</li> </ol>	<p>서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시행규칙 제2조(사무부서지정) ①----- -----<u>기획 감사담당관실</u>로 한다.</p> <p>②----- <u>기획 감사담당관실</u>,----- ----- ----- <u>기획감사 담당관실</u>-----.</p> <p>③----- -----.</p> <p>&lt;당해년도 예산편&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 <u>기획감사담당 관실</u></li> <li>2. ----- : <u>기획감사담당 관실</u></li> <li>3. (현행과 같음)</li> <li>4. ----- : <u>기획감사담당관실</u></li> <li>5. ----- : <u>기획감사담당관실(-----)</u></li> <li>6. (현행과 같음)</li> <li>7. ----- : <u>상하수도사업소</u></li> </ol> <p>&lt;전년도 결산편&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현행과 같음)</li> <li>3. (현행과 같음)</li> <li>4. ----- : <u>기획감사담당관실</u></li> <li>5. ----- : <u>기획감사담당관실(-----)</u></li> <li>6. (현행과 같음)</li> </ol>

현행	개정안
<p>7. 공기업운영상황 : <u>수도과</u>  서산시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  제3조(구성) ①(생략)  ②(생략)  ③위원은 <u>총무국장·사회산업국장·건설도시국장·기획담당관·문화공보담당관·감사담당관·정책개발담당관</u>으로 한다.</p> <p>서산시자치법규집발간규칙  제5조(배부) ①법규집은 각 실과·사업소·읍·면·동 기타 지방공공단체 및 도에 배부 또는 제출하되 그 배부할 기관 및 수량은 매년 예산범위안에서 <u>기획담당관</u>이 이를 정한다.  ②<u>기획담당관</u>은 법규집 대본 또는 추록을 배부할 때에는 별도 서식의 법규집 배부대장에 그 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p> <p>서산시통계연보발간규칙  제5조(자료수집) ①연보의 발간사무는 <u>기획담당관</u>이 주관한다.  ②각·실과장 및 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장은 매년도 연보 발간자료를 수집하여 다음연도 4월말까지 <u>기획담당관</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서산시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u>감사담당관</u>으로 하고 위원은 담당관·과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하며 감사계장을 간사로 한다.</p>	<p>7. ----- : <u>상하수도사업소</u>  서산시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  제3조(구성)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u>총무국장·산업건설국장·기획감사담당관·문화공보담당관</u>-----.</p> <p>서산시자치법규집발간규칙  제5조(배부) ①-----  -----  -----<u>기획감사담당관</u>-----  -----  ②<u>기획감사담당관</u>-----  -----  -----  -----  -----<u>기획감사담당관</u>-----  -----  -----  -----</p> <p>서산시통계연보발간규칙  제5조(자료수집) ①----- <u>기획감사담당관</u>-----  ②-----  -----  -----<u>기획감사담당관</u>-----  -----  -----  -----</p> <p>서산시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위원회의구성) -----  -----<u>기획감사담당관</u>-----  -----  -----  -----  -----</p>





현행	개정안
<p>1. 총무담당간사 : 총무과장</p> <p>2. (생략)</p> <p>제6조(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①(생략)</p> <p>②(생략)</p> <p>1. 시 지원본부</p> <p>가. 생략</p> <p>나. 상황실은 실과장 20인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담당관이 되며, 분야별 지원 반장을 지휘·감독한다.</p> <p>다~마(생략)</p> <p>2. 각 지원본부</p> <p>가~마(생략)</p>	<p>1. ----- : 자치행정과장</p> <p>2. (현행과 같음)</p> <p>제6조(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①(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1.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 -----기획감사담당관----- -----</p> <p>다~마(현행과 같음)</p> <p>2. -----</p> <p>가~마(현행과 같음)</p>
<p>서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p> <p>제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용자대상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사회진흥과장, 산업과장, 축산과장과 유관기관의 직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p> <p>②(생략)</p> <p>③(생략)</p> <p>④(생략)</p>	<p>서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p> <p>제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산업과장, 축산해양과장과 유관기관의 직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p> <p>②(현행과 같음)</p> <p>③(현행과 같음)</p> <p>④(현행과 같음)</p>
<p>서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p> <p>제7조(간사 등) ①(생략)</p> <p>②간사는 사회진흥과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p>	<p>서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p> <p>제7조(간사 등) ①(현행과 같음)</p> <p>②-----문화공보담당관----- -----</p>





현행	개정안
<p>③기획담당관은 제2항의 설명서를 총괄하여 예산 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p>	<p>③기획감사담당관----- ----- -----</p>
<p>제14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 예산요구서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u>기획담당관</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4조(예산안의 수정) ----- ----- ----- -----<u>기획감사담당관</u>-----</p>
<p>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 [별지제11호 서식]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u>기획담당관</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 ----- ----- -----<u>기획감사담당관</u>-----</p>
<p>②제14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준하여 <u>기획담당관</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u>기획감사담당관</u>-----</p>
<p>③법제3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담당관·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업비의 사용 요구가 있을 때에는 <u>기획담당관</u>은 시장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담당관·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p>	<p>③----- ----- -----<u>기획감사담당관</u>----- ----- -----</p>
<p>④(생략) ⑤(생략)</p>	<p>④(현행과 같음) ⑤(현행과 같음)</p>
<p>제16조(예산의 이월) 본청 담당관·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요구서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와 같이 <u>기획담당관</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6조(예산의 이월)----- ----- ----- ----- ----- -----<u>기획감사담당관</u>-----</p>
<p>제17조(의결예산의 통지) <u>기획담당관</u>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청 담당관·과장, 관서의 장 및 금고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7조(의결예산의 통지) <u>기획감사담당관</u>----- ----- -----</p>









현행	개정안
<p>②(생략)</p> <p>서산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p> <p>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u>사회산업국장</u>, 위원은 관련되는 부서의 과장급 4명 내외로 하고 사회계장을 간사로 한다.</p>	<p>②(현행과 같음)</p> <p>서산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p> <p>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 ----- -----<u>총무국장</u>----- -----</p>
<p>서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p> <p>제10조(회계공무원) ①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을 둔다.</p> <p>1. 기금운용관 : <u>사회과장</u></p> <p>2. (생략)</p>	<p>서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p> <p>제10조(회계공무원) ①----- ----- -----</p> <p>1. ----- : <u>사회복지과장</u></p> <p>2. (현행과 같음)</p>
<p>②(생략)</p> <p>서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p> <p>제7조(장학기금의 관리 등) ①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장학기금의 수입·지출과 현금보관 관리는 <u>사회과장</u>이 한다.</p> <p>②(생략)</p>	<p>②(현행과 같음)</p> <p>서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p> <p>제7조(장학기금의 관리 등) ①----- ----- -----<u>사회복지과장</u>-----</p> <p>②(현행과 같음)</p>
<p>서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p> <p>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생략)</p> <p>②(생략)</p>	<p>서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p> <p>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국장, <u>사회산업국장</u>, <u>건설도시국장</u>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장과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③----- -----<u>산업건설국장</u>----- -----</p>
<p>④(생략)</p> <p>⑤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u>가정복지과장</u>으로 하고 서기는 <u>가정복지계장</u>으로 한다.</p>	<p>④(생략)</p> <p>⑤----- -----<u>다성</u> -----<u>사회복지과장</u>----- -----</p>
<p>제11조(회계관계공무원등) ①(생략)</p> <p>1. 기금운용관 : <u>가정복지과장</u></p> <p>2. (생략)</p> <p>②(생략)</p>	<p>제11조(회계관계공무원등) ①(현행과 같음)</p> <p>1. ----- : <u>다성</u> <u>사회복지과장</u></p> <p>2. (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p>	<p>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p>
<p>제13조(융자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용)</p> <p>① 내지 ③(생략)</p> <p>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생략)</p> <p>2. <u>사회산업국장</u></p> <p>3. <u>기획담당관</u></p> <p>4호 내지 10호 (생략)</p> <p>⑤(생략)</p>	<p>제13조(융자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용)</p> <p>① 내지 ③(현행과 같음)</p> <p>④----- -----</p> <p>1. (현행과 같음)</p> <p>2. <u>총무국장</u></p> <p>3. <u>기획감사담당관</u></p> <p>4호 내지 10호 (현행과 같음)</p> <p>⑤(현행과 같음)</p>
<p>제18조(기금의 운영관리) ①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간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u>사회산업국장</u>,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계장이 된다. 단, 제5조에 의거 이를 도지사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18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 -----<u>총무국장</u>----- -----</p>

현행	개정안
<p>②(생략)</p> <p>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p> <p>제6조(회계공무원등) ①(생략)</p> <p>1. 기금운용관 : <u>건설도시국장</u></p> <p>2. (생략)</p> <p>②(생략)</p> <p>서산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p> <p>제2조(재해대책본부의운영) ①(생략)</p> <p>②통제관은 <u>건설도시국장</u>이되며, 담당관은 <u>건설과장</u>이 되고, 실무반은 서산시관련 공무원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 등으로 한다.</p> <p>서산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p> <p>제3조(시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 방조제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관리방조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p> <p>1. (생략)</p> <p>2. 심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u>건설도시국장</u>으로 하며, 위원은 농지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각각 4인이내의 자를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p> <p>3. (생략)</p>	<p>②(현행과 같음)</p> <p>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p> <p>제6조(회계공무원등) ①(현행과 같음)</p> <p>1. ----- : <u>총무국장</u></p> <p>2. (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서산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p> <p>제2조(재해대책본부의운영) ①(현행과 같음)</p> <p>②-----<u>총무국장</u>-----  <u>민방위재난관리과장</u>-----  -----</p> <p>서산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p> <p>제3조(시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산업건설국장</u>-----  -----  -----</p> <p>3.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서산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p> <p>제3조(조직및임기) ①(생략)</p> <p>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p> <p>③(생략)</p> <p>④당연직 위원은 세무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수도과장, 지적과장이 된다.</p> <p>⑤(생략)</p>	<p>서산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p> <p>제3조(조직및임기) ①(현행과 같음)</p> <p>②-----산업건설국장-----.</p> <p>③(현행과 같음)</p> <p>④-----도시건축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p> <p>⑤(현행과 같음)</p>
<p>서산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p> <p>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징수관 : <u>건설도시국장</u></li> <li>2. 분임징수관 : <u>수도과장</u></li> <li>3. 경리관 : <u>건설도시국장</u></li> <li>4. 분임경리관 : <u>수도과장</u></li> <li>5. 총괄채권관리관 : <u>건설도시국장</u></li> <li>6. 채권관리관 : <u>수도과장</u></li> <li>7. 총괄채무관리관 : <u>건설도시국장</u></li> <li>8. 채무관리관 : <u>수도과장</u></li> <li>9. 물품관리관 : <u>건설도시국장</u></li> <li>10. (생략)</li> <li>11. (생략)</li> <li>12. (생략)</li> <li>13. (생략)</li> </ol>	<p>서산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p> <p>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 <u>산업건설국장</u></li> <li>2. ----- : <u>상하수도사업소장</u></li> <li>3. ----- : <u>산업건설국장</u></li> <li>4. ----- : <u>상하수도사업소장</u></li> <li>5. ----- : <u>산업건설국장</u></li> <li>6. ----- : <u>상하수도사업소장</u></li> <li>7. ----- : <u>산업건설국장</u></li> <li>8. ----- : <u>상하수도사업소장</u></li> <li>9. ----- : <u>산업건설국장</u></li> <li>10. (현행과 같음)</li> <li>11. (현행과 같음)</li> <li>12. (현행과 같음)</li> <li>13. (현행과 같음)</li> </ol>

현행	개정안
<p>서산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징수관 : <u>건설도시국장</u></li> <li>2. 분임징수관 : <u>교통행정과장</u></li> <li>3. 경리관 : <u>건설도시국장</u></li> <li>4. 분임경리관 : <u>교통행정과장</u></li> <li>5. 총괄채권관리관 : <u>건설도시국장</u></li> <li>6. 채권관리관 : <u>교통행정과장</u></li> <li>7. 총괄채무관리관 : <u>건설도시국장</u></li> <li>8. 채무관리관 : <u>교통행정과장</u></li> <li>9. 물품관리관 : <u>교통행정과장</u></li> <li>10. (생략)</li> <li>11. (생략)</li> <li>12. (생략)</li> <li>13. (생략)</li> </ol>	<p>서산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 <u>산업건설국장</u></li> <li>2. ----- : <u>교통과장</u></li> <li>3. ----- : <u>산업건설국장</u></li> <li>4. ----- : <u>교통과장</u></li> <li>5. ----- : <u>산업건설국장</u></li> <li>6. ----- : <u>교통과장</u></li> <li>7. ----- : <u>산업건설국장</u></li> <li>8. ----- : <u>교통과장</u></li> <li>9. ----- : <u>교통과장</u></li> <li>10. (현행과 같음)</li> <li>11. (현행과 같음)</li> <li>12. (현행과 같음)</li> <li>13. (현행과 같음)</li> </ol>
<p>서산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제3조(구성) ①(생략)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총무과장</u></li> <li>2. <u>교통행정과장</u></li> <li>3. <u>건설과장</u></li> <li>4. <u>도시과장</u></li> </ol>	<p>서산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제3조(구성) ①(현행과 같음) ②-----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자치행정과장</u></li> <li>2. <u>건설과장</u></li> <li>3. <u>도시건축과장</u></li> <li>4. <u>교통과장</u></li> </ol>

현행	개정안
<p>5호 내지 7호 (생략)            ③(생략)            서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제3조(구성) ①(생략)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③(생략)</p>	<p>5호 내지 7호 (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서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제3조(구성) ①(현행과 같음)            ②-----총무국장-----            ③(현행과 같음)</p>